



노동부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 3동
www.happybalance.kr
| 노동종합상담센터 | 1350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일·가정 양립 - 노동부가 지원합니다



노동부

일도 가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당신-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만드세요!



이제 막 신입아빠가 된 박재훈 씨는
3일간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받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 9개월 예비엄마 김지혜 씨는
90일의 산전후휴가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온 이정혜 씨는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만들어 갑니다.



90일의 산전후휴가
3일의 배우자출산휴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까지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노동부가 지원합니다

모성보호

산전후휴가(급여)제도	04
유사산휴가(급여)제도	05
배우자출산휴가제	06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0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08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09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0

직장보육시설 지원

설치비용융자	12
설치비용무상지원	13
보육교사등 임금지원	14

여성고용촉진지원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 점포지원 및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과정 제공	15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6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17
엄마 채용 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비용지원	18
여성고용 환경개선 융자사업	19
주부단기적응훈련	20
공공보육시설 운영지원	22

01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대 90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연속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고용보험기금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급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최대 405만원
대규모기업	30일	최대 135만원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

※ 산전후휴가급여의 감액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77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0~10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1~125조

» 알아두세요!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업무 복귀 시 휴가 전과 동일·동등한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보장됩니다(육아휴직도 동일함).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

※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모성보호에서 내려받으세요

02 유사산휴가(급여)제도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가 보장되며 유·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자는 임신주수, 자연유산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급여신청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휴가기간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 일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 일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 일부터 90일까지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 알아두세요!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제가 신설됩니다('08. 7. 1 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08. 7. 1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고용자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태아검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신설).

모성보호

엄마의 마음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지원합니다

03 배우자출산휴가제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제 사용한 날에 대한 유급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 사용기간 |

- 3일의 무급휴가(근로자가 3일 이하로 청구가능)

| 사용시기 |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용권의 소멸 |

- 출산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0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3세 미만('07.12.31.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나,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가능(단,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기간에는 수급불가)
- 또한 자녀 연령이 3세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다만 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부근로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지급은 이렇게!

육아휴직을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입니다.

| 구비서류 |

1.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내려받으세요.

»참고하세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당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관련 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제70~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9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120조



육아휴직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지원합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노동부가 지원합니다

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08. 6. 22부터 시행)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됩니다.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3세 미만('07.12.31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text{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times \frac{\text{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text{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times 8\text{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구분	전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 생후 만 3세('07. 12. 31 이전출생자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급여	• 월 50만원 근로자에게 지급	• 없음
장려금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	
거부시	• 5백만원 이하 벌금	• 벌칙 없음(다만, 서면통보 및 협의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징역 3년, 2천만원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징역 3년, 2천만원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과태료) • 연장근로 제한(1천만원 벌금)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방식 :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관련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03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으로 표현)을 30일(산전 · 후 유급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지원합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노동부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서를 육아휴직등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우선지원대상기업외의 기업으로 산후유급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53조

04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08.6.22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이같은 개정규정 적용).

※ 다만,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사례를 통한 분석 |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쓰는 경우

'08. 5. 1 산전후휴가 개시일

'08. 7. 30 육아휴직등 개시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시점 : 개정 규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사용했으므로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 30일이 되는 날인 '08. 4. 1부터 채용하면 됨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쓰는 경우

'08. 5. 1
산전후휴가
개시일

'08. 7. 29
산전후휴가
종료일

'09. 1. 1
육아휴직등
개시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시점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등 개시일 이전 30일이 되는 날인 '08. 12. 2부터 채용하면 됨.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 센터에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제4항·제5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53조





직장보육시설지원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노동부가 지원합니다

01 설치비용융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합니다.

| 자격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 지원내용 및 수준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 융자한도 : 최고 5억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연 1.0% 대기업 연 2.0%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에 연중 수시신청
- 구비서류

1. 투자계획서(소정양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3. 등기부등본 1부 (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 (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 (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6. 건물등기부등본 1부 (시설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소정양식) 1부 (공동보육시설설치의 경우에 한함)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145조

02 설치비용무상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무상 지원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합니다.

| 자격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체

| 지원내용 및 수준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를 영아·장애아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80%까지 차등지원

- 시설전환비 : 최고 1억원(사업주단체의 경우 최고 2억원)
- 유구비품비 : 최고 5천만원

※시설건립비를 융자받은 경우 유구비품비 지원가능

※시설매입비 또는 시설임차비를 융자받은 경우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에 연중 수시신청
- 구비서류

1. 투자계획서(소정양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시설전환의 경우)
3. 건물등기부등본 1부 (시설전환의 경우)
4. 유구비품비 산출내역서 1부 (유구비품의 경우에 한함)
5.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1부 (공동보육시설 설치의 경우에 한함)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145조

직장보육시설지원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고용촉진지원

엄마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03 보육교사등 인건비지원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 자격요건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4.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 지원내용 및 수준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지원금액 : 직장인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교시설의 장 및 취사부 1인당 월 800,000원(단, 보육교사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월 8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신청방법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제145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제고합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홍보
- 직장보육시설 특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직장보육시설 인력관리 및 지원
- 직장보육시설 사업주 설치 및 상담지원, 공단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홍보
- 전국적인 직장보육시설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육 서비스 연계지원
- 직장보육정보지 발간 및 배포
- 직장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및 운영상담
-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세미나 실시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16-42 (T 051.328.5272~5) www.escac.or.kr

01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 점포지원

재취업이 곤란한 실직여성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을 지원합니다.

육아부담,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재취업이 곤란한 실직여성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지원을 통해 경제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합니다.

| 사업대상 |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녀 및 가족 부양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직여성가장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내의 점포를 임차하여 실직여성가장에게 대여하고, 전세금에 대하여 약정이자(연 3.0%)를 매월 납부

| 지원방법 |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건물주로부터 임차(전세권 설정)하여 대여(전대)하고, 여성가장은 전세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45조

02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과정 제공

여성가장 실업자가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제공을 통해 여성가장 실업자의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취업이 취약한 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내용 |

지방노동관서장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훈련생에게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월 5~41만원의 훈련수당 지원

- 교통비 : 5만원
- 식비 : 6만원



여성고용촉진지원

엄마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노동부가 지원합니다

- 가족수당 : 1인당 5만원(최대 15만원)
- 가계보조금 : 15만원(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경우)

| 사업대상 |

-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 미혼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가장
-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중인 여성가장
- 배우자가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 있는 여성가장
-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성가장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기관에 신청하세요

관련 조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38호)

03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직 여성가장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 지원내용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 지원대상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을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지급제한 |

- 최저임금 미만자,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전 3개월, 재고용 후 12개월 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 지원신청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04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임신 16주 이후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원수준 |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급

| 사업주조건 |

사업의 규모·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지원신청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1조



여성고용촉진지원

엄마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노동부가 지원합니다

05 엄마 채용 장려금

출산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출산여성)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출산여성)를 채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 ('08년도 지원수준 : 고용후 처음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

| 사업주조건 |

사업의 규모·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근로자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 근로자조건 |

- 사업주가 채용한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을 경우
- 현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 구직등록을 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어야 함
-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 지원신청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문화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 지원내용 |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사관리체계 개선,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업무영역 확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 지원수준 |

사업주에게 컨설팅 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5천만원 한도)

| 사업주조건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 최근 3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고용촉진 컨설팅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지원신청 |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노동연구원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

| 선급금지원 |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사업주에게 총 지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 선지급

-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지원금지급신청서
- 컨설팅 실시계획서
- 컨설팅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종지원금 |

컨설팅 완료 후 총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 최종 지급

-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지원금지급신청서
- 컨설팅 완료신고서
-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6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비용지원

여성 고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채용, 직무배치, 승진, 보상, 근로조건, 조직

07 여성고용 환경개선 융자사업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고용촉진지원

엄마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노동부가 지원합니다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그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이란 : 모유 착유(수유) 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 자격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 지원내용 및 수준 |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 융자한도 : 최고 5억원(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에 연중 수시신청

| 구비서류 |

1. 투자계획서(소정양식)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3. 등기부등본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6.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소정양식) 1부(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 경우에 한함)

관련 조문 : 고용보험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제145조

직무능력을 훈련하여 취업촉진을 지원합니다.

※ 취업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습득 및 건전한 직업관과 산업안전 등에 관한 내용, 1일 4시간 / 1주 20시간

| 자격요건 |

- 주부(결혼한 사실이 있는 여성, 만 50세 이상의 남·여)
 - 준고령자(50~54세), 고령자(55세 이상)
- 주부,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중심으로 선정
 - 노동부고시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160직종(공공 70, 민간 90)
 - 공단자체개발직종 : 65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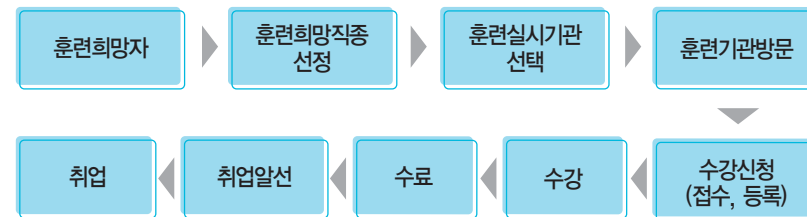
| 훈련기간 |

사회복지법인,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등으로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35개기관

| 훈련혜택 |

수강료 전액 무료, 수료 후 취업알선 지원

| 추진절차 |



※ 단기적응훈련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전화 02-3271-9577)로 문의하세요.

08 주부단기적응훈련

취업 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지원합니다.

통상적인 노동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주부 및 준·고령자에게 1개월 이내 최소한의

공공보육시설 운영지원

| 서비스개요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공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 공공보육시설운영주체 |

근로복지공단 위탁 운영 : • 공공보육시설 16개소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1개소 운영

공공보육시설현황

시 설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주소
창원 어린이집	경남 창원시 남양동 10	055-266-0291	http://www.escac.or.kr/kids/changwon.html
안산 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5-1	031-491-4210	http://ansan.kidis.co.kr
모아래 어린이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19-21	02-865-7220	http://moarae.kidis.co.kr
수인들 어린이집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7-3	043-221-0281	http://www.cyworld.com/suandle
인천 어린이집	인천시 서구 심곡동 342-5	032-563-1963	http://incheon.kidis.co.kr
천안 어린이집	충남 천안시 쌍용동 949	041-577-4321	http://www.escac.or.kr/kids/cheonan.html
대전 어린이집	대전시 동구 자양동 203-7	042-628-5581	http://www.escac.or.kr/kids/daejeon.html
포항 어린이집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01-1	054-291-1020	http://www.escac.or.kr/kids/pohang.html
대구 어린이집	대구시 서구 종리동 81-3	053-563-5172	http://daegu.kidis.co.kr
동해 어린이집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51-10	033-535-7455	http://donghae.kidis.co.kr
광양 어린이집	전남 광양시 중동 1360-35	061-791-3350	http://www.escac.or.kr/kids/gwangyang.html
부산 어린이집	부산시 사상구 과법동 516-42	051-311-7204	http://busan.kidis.co.kr
수원 어린이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4-21	031-254-1865	http://suwon.kidis.co.kr
정읍 어린이집	전북 정읍시 수성동 1028-1	063-538-0251	http://www.escac.or.kr/kids/jeongeup.html
경주 어린이집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22-3	054-746-0774	http://gj.kidis.co.kr
부천 어린이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6	032-672-1727	http://www.welco4i.or.kr/
군포 어린이집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02-11	031-458-2327	http://www.escac.or.kr/kids/gunpo.html
조치원 어린이집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남리 281	041-862-5015	http://www.escac.or.kr/kids/pochiwon.html
울산 어린이집	울산시 북구 호계동 토지구획지구 4블럭 5-1	052-295-6975	http://www.escac.or.kr/kids/ulsan.html
진해 어린이집	경남 진해시 이동 457	055-544-5556	http://www.escac.or.kr/kids/jinhae.html
인천남동 어린이집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48 BL 6~9	032-465-5885	http://namdong.kidis.co.kr
제주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5-1	064-723-3020	http://www.escac.or.kr/kids/jeju.html
군산 어린이집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73-2	063-465-1606	http://www.escac.or.kr/kids/kunsan.html
고양 어린이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63	031-979-0234	http://goyang.kidis.co.kr

※ 공공직장보육시설 입소순위(2007년)

1순위 : 법정저소득층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우선 입소대상)
3순위 : 기타 저소득층 등 보호아동

2순위 : 맞벌이 가정 및 결혼가정(공단 우선 입소대상)
4순위 : 일반주민의 자녀

전국고용지원센터

관서별	센 터 명	일반전화	관서별	센 터 명	일반전화
서울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02-2004-7030	대구청	문경고용지원센터	054-556-8219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02-3468-4794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054-851-8061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02-2142-8924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032-460-4700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02-701-1919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32-512-1919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02-2639-2300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031-231-7864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2-2171-1700		용인고용지원센터	031-286-1919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02-3282-9200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031-646-1203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031-828-0900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안성출장센터	031-671-1921~3
	구리고용지원센터	031-564-1919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031-920-3937	경인청	김포고용지원센터	031-983-9464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033-250-1900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031-463-0781~6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033-610-1919		광명고용지원센터	02-2688-7990
	속초고용지원센터	033-637-2673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2-6970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	033-744-9090		시흥고용지원센터	031-496-1900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033-552-8605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031-739-3174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삼척출장센터	033-573-9911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이천출장센터	031-632-9898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	033-371-6260		광주고용지원센터	031-769-0168~9
부산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051-860-1919	광주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062-609-8500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051-559-2400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063-270-9100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51-330-9900		정읍고용지원센터	063-532-8216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055-239-0900		남원고용지원센터	063-631-1919
	미산고용지원센터	055-299-8219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063-839-0041
	진해고용지원센터	055-547-6277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김제출장센터	063-548-1919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	052-228-1919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063-450-0540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055-330-6400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부안출장센터	063-581-7637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밀양출장센터	055-356-8225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061-280-0500
	양산고용지원센터	055-387-0806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강진출장센터	061-434-7791
대구청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055-753-9090	대전청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061-740-9114
	하동고용지원센터	055-884-8219		여수고용지원센터	061-6500-155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055-650-1800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42-480-6400
	거제고용지원센터	055-637-5490		대전종합센터 금산출장센터	041-751-3219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053-667-6000		공주고용지원센터	041-854-8219
	경산고용지원센터	053-812-2462		공주센터 논산출장센터	041-736-8219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53-605-6500		공주센터 연기출장센터	041-865-3219
	대구강북고용지원센터	053-606-8000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043-230-6700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054-280-3000		옥천고용지원센터	043-731-7414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울진출장센터	054-783-0841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041-620-7451
대전청	경주고용지원센터	054-778-2500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043-850-4017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054-440-3310		재천고용지원센터	043-652-1919
	김천고용지원센터	054-431-2728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041-934-2400
	영주종합고용지원센터	054-631-1919		서산고용지원센터	041-669-1919